



재외동포와 병역제도



목차

재외동포와 병역제도

I 병역제도 개관

II 국외여행허가 제도

III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IV 국적과 병역의무

V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VI 안내 사항

vii 질의 응답

I

병역제도 개관

1. 병역의무
2. 병역의무의 헌법적·사회적 의의
3. 병역이행 흐름도



근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의 헌법적 · 사회적 의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례 (2006.11.30. 2005헌마739)



국민개병주의(제39조)
+
평등원칙(제11조)



병역부담 평등 원칙



-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헌법적 요청일 뿐 아니라
- 다른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

병역 이행에 있어서 "공정" 의 가치를 중시

병역이행 흐름도



병역준비역 편입

18세

병역의무 발생



병역판정검사

19세

병역처분



징·소집 복무

19~37세

19~37세까지 징·소집 입영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



예비군 복무

40세까지

40세까지 예비군 편성

전시(戰時) 등 45세까지 병역의무 기간 연장

II

국외여행허가 제도

1. 제도개요(취지)
2. 국외여행허가 제도
3. 일반 허가
4. 국외이주 허가
5. 국외이주 허가 취소
6. 국외여행허가 제한
7.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8. 재외국민 2세
9. 재외국민 2세 취소
10. 모국수학생

제도개요(취지)

병역자원의 정확한 관리 및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 허가**를 받아야 함

군 소요 적기 충원 및 병역기피 방지를 위해
국외여행 목적, 허가대상과 범위, 제한사항 등 세분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일부 제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02 국외여행허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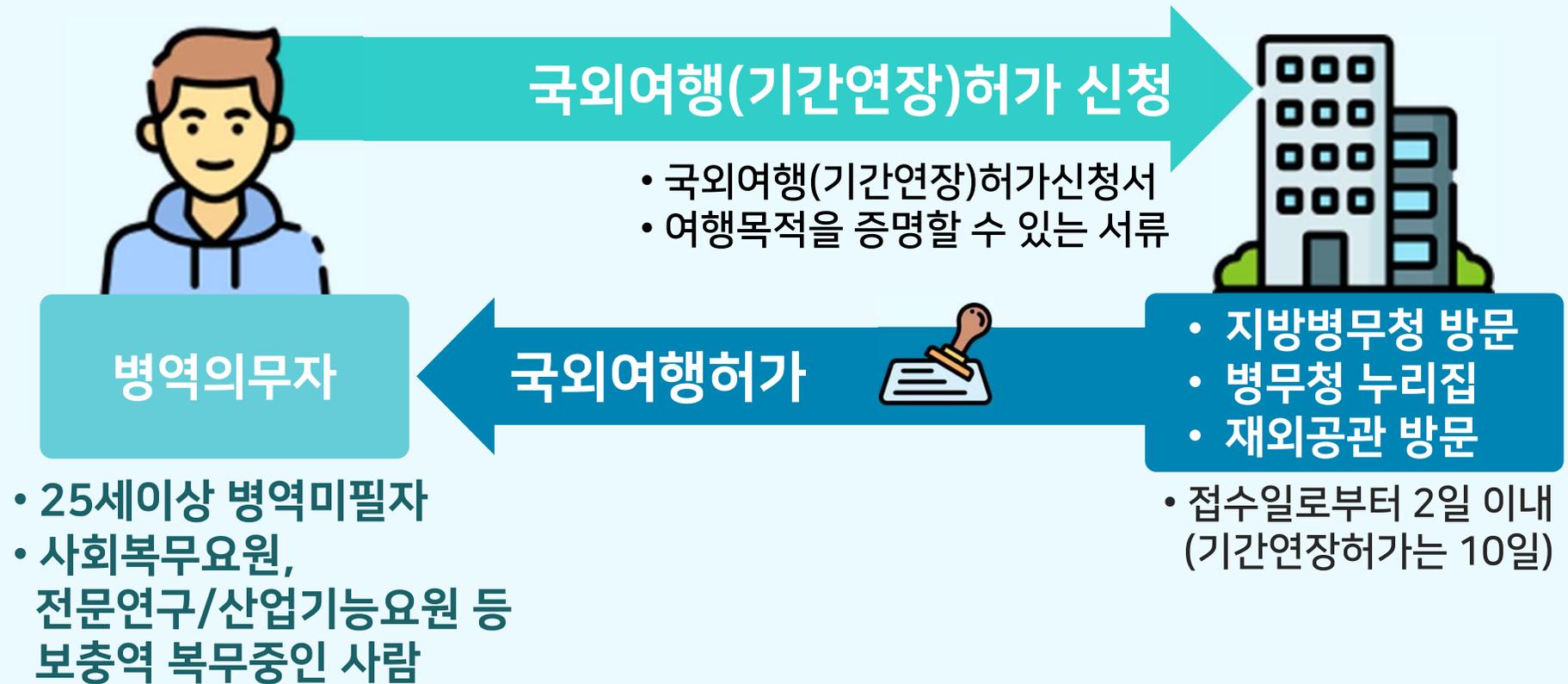
25세

37세

4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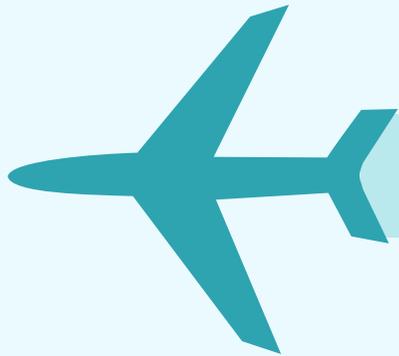
구분	 국외여행허가 의무	(38세)입영 등의무 면제	(41세)병역의무 종료
일반허가자 (유학생 등)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right: 5px;">일정기간만 허가</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right: 5px;">귀국</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5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2d62; color: white; padding: 5px;">병역의무 부과</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미귀국</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5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5px;">형사 처벌[3년이하 징역, 1~5년 징역(기피목적 有)] / 여권발급 제한</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5px; margin-top: 5px;">행정 제재(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5px; margin-top: 5px;">인적사항 병무청 누리집 공개</div> </div>		
국외이주 허가자 (영주권자 등)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생활근거지 국외인 경우 37세까지 허가</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국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체재 및 영리활동 불가</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2d62; color: white; padding: 5px;">병역의무 부과</div>		

일반 허가



※ 24세 이전 출국자는 25세가 되는 해 1.15. 까지, 이미 허가받고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15일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재외공관을 거쳐 병무청에 허가 신청해야 함

일반허가 목적/기간



일정기간 범위 내 허가 → 귀국 → 병역이행

단기여행

- 1회 6개월이내, 통틀어 2년범위에서 27세까지
-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전까지

유학

-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정일 6개월까지
 - 학교별 제한연령 내 졸업(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1년' 범위에서 졸업예정일 6개월까지(박사학위 취득 가능 시 30세6월말까지)
- * 영 제124조 참조

연수·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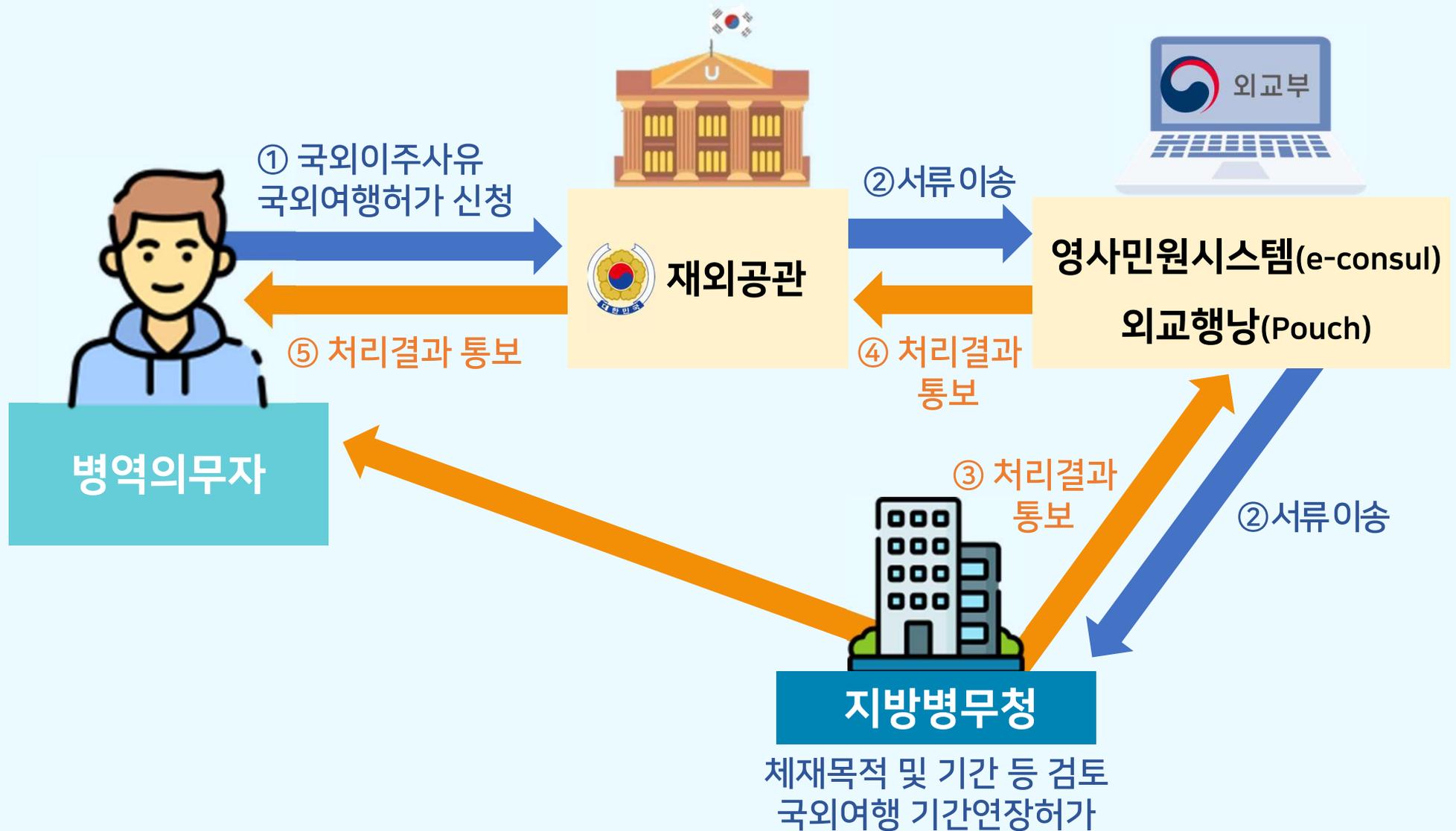
2년이내 27세까지
(박사과정 등은 28세까지)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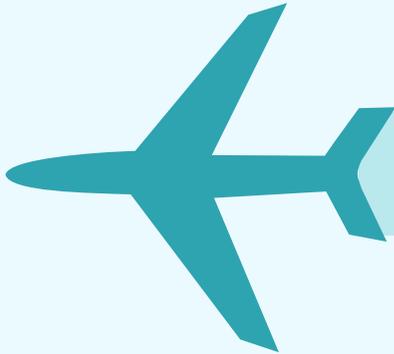
질병치료, 경조사 등
3개월 범위내

※ 허가기간 중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국내체재 시 허가 취소

국외이주 허가



국외이주 허가 목적/기간



37세까지 허가 → 38세 되는 해 1월 1일 전시근로역 편입

※ 국외로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병역의무와의 조화 도모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

부·모 동거

- 부모와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취득한 경우
- 부모와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국외파견공무원, 주재원 제외)
- 외국 시민권(국적)을 가진 부모와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복수국적자

- 외국 영주권(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와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이전부터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국외이주 허가 취소

국외이주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영 제147조의2)

01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02 1년 내 통틀어 6개월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국내체재기간 미합산>

- 본인혼인, 배우자출산,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장례, 회갑·혼인 참석
- 대한체육회산하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임원으로 참가로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03 국내취업 등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이상 영리활동 하는 경우

※ 2,3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 번 3개월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기간 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외여행허가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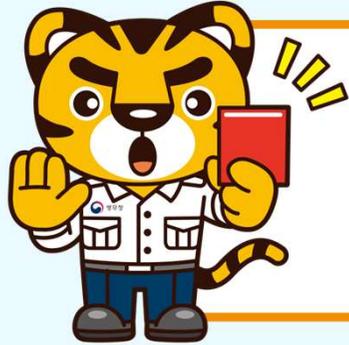
국외여행허가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됩니다

1. 병역판정검사,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군복무,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장기체재, 영리활동으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단, 영주귀국 신고한 사람 제외)
5. 병역의무를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손상, 속임수를 쓴 경우
6.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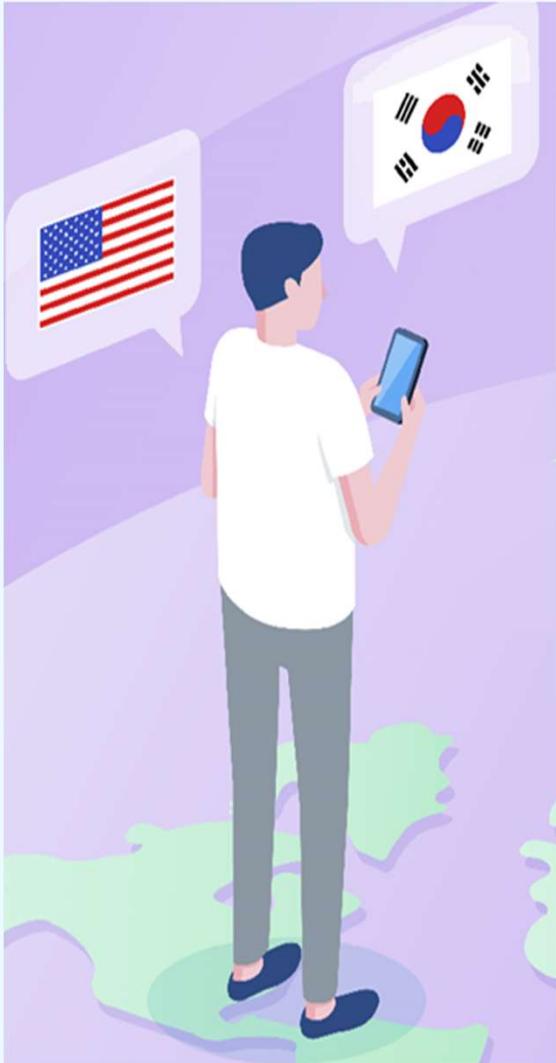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국외여행허가 받지 않고 출국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기피 목적 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94조)
- 허가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등 누리집 공개(병역법제81조의2)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여권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 및 효력상실(제13조), 여권발급 제한(제12조)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대상자로 관리(병역법 제71조) * '79.12.31. 이전 출생자는 35세
- 국외여행 제한 등(병역법시행령 제145조)



● 재외국민2세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 거주하면서 외국 국적/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영 제128조제5항)

< 계속 국외거주로 인정하는 경우 >

- 17세 이전에 국내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
-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 기간 동안 국내 체재한 경우

장기간 해외거주로 우리 문화 이해 부족, 언어소통 곤란 고려
'재외국민 2세' 정의, 의무부과 별도 규정/적용

➔ 18세 이후 통산 3년간 국내체재 및 영리활동 가능

재외국민 2세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2세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또는 일반 국외이주자로 관리합니다. (영 제128조 제7항)

01

-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 부 또는 모와 거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받은 사람이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병역의무
부과

02

- '93.12.31. 이전 출생자 : '18.5.29. 이후 통산 국내체재 3년 초과한 경우
 - '94.1.1. 이후 출생자 : 18세 이후 통산 국내체재 3년 초과한 경우
- ➔ 재외국민 2세 지위는 상실되어도 37세까지 병역연기 가능

일반
국외이주자
관리 전환

일반
국외이주자

-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 국내취업 등 1년 내 통틀어 60일 이상 영리활동하는 경우

병역연기 취소
병역의무 부과

모국수학생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연기 또는 국외여행허가 받은 사람이
모국의 문화와 언어습득을 위해
국내 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수학 허용

※ 단, 부·모 또는 배우자가 함께 국내에서 체재하지 아니하여야 함

모국수학 가능기간

-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박사과정 30세 6월말)
- 재외국민을 위한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재학하는 기간까지
- 국내 교육기관 부설 어학당 등에서 수학하는 경우 1년 범위내

병역의무 부과

수학기간 동안은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종료된 후 국내 체재 시 의무부과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 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영리활동을 한 경우
-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 있고, 모국수학자가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 졸업 후 1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Ⅲ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1.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2. 병역의무자 여권발급과 국외여행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25세이상 병역미필자(보충역 등 복무 중인 자 포함)

여권제도 개선

(‘21.1.5 부)

1년 단수여권



국외여행허가증명서가
있어야 여권 발급 가능



5년

일반 복수여권



- 37세까지 허가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국외여행허가증명서가 **없어도**
여권 발급 가능

But,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출국 가능
허가 받지 않을 경우 출국 불가!

• 법무부 출입국시스템 연계

병역의무자 여권발급과 국외여행

구 분		여권종류 (유효기간)	국외여행허가 (병무청)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		18세~24세	허가 불요
		25세~37세	허가 필요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허가받은 사람		복수여권(10년)	허가 필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복무 중인 사람	18세~37세	허가 필요
	6개월 이내 복무만료 예정인 사람	18세~37세	허가 필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18세~37세	허가 불요

* 병역법 상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ex) 25세 = 2024년-1999년

25세이상인 병역미필자와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중인 사람(나이 무관)은 여권이 있더라도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국외 체재) 가능!!

IV

국적과 병역의무

1.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2. 국적변경자 병역의무
3. 국적법 신설
4. 병역의무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5.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선택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복수국적자란?

혈통주의(속인주의)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

18세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 이탈

기간 내 국적 이탈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병역의무자로 관리

- ❖ (국내거주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 ❖ (국외거주자) 37세까지 병역연기 가능, 24세부터 25세 1월15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해야 함

* 단,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 시 병역의무부과

국적변경자 병역의무



- 국적변경자(상실,이탈)는 **외국인** → **병적제적**
- **18세 3월말**까지 국적이탈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국적이탈 제한**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만 2년 이내 국적이탈 가능

-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한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하였던 자	국적회복 제한(국적법 제9조제2항제3호)
병역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F-4)40세까지 제한 (재외동포법 제5조)

국적법(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 신설



헌법재판소

• 국적이탈 관련 판결 ('20.9.24.) *개정입법 시한:'22.9.30.

국적선택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복수국적 남성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등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헌법 불합치 결정



• 제14조의 2 ('22.9.15. 신설)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기본 요건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출생 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6세 미만 아동일때 외국 이주 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고려 요소

- ①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②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 외국인지 여부
- ③ 입국 횟수 및 체류목적·기간 ④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
- ⑤ 복수국적으로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 불이익 여부
- ⑥ 병역의무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신청

-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청, 국적이탈 허가자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

병역의무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의 국적선택 신고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대상

- 선척적 복수국적자로서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신고기간

- 출생이후 부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 또는 현역·상근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 * 여성은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신고장소

-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선택

구분	한국국적선택 (외국국적포기)	한국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복수국적 유지 가능)		국적이탈 (한국국적포기)
만18세 3월까지	가능	가능 (원정출산자 불가능)		가능 (원정출산자 불가능)
만22세 생일 전				불가능
병역의무 해소(이행/면제) 이후 2년 이내	가능	이행	가능 (원정출산자 불가능)	가능
		면제	불가능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적선택 명령(국적법 제14조의2)				
명령 후 1년 이내	가능	불가능		가능
명령 후 1년 경과	국적선택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적상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2.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현황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영주권자인데 입영하고
싶어요!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거주자의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제도

개요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 군 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 * 뉴욕 한인회 건의 → '04년 도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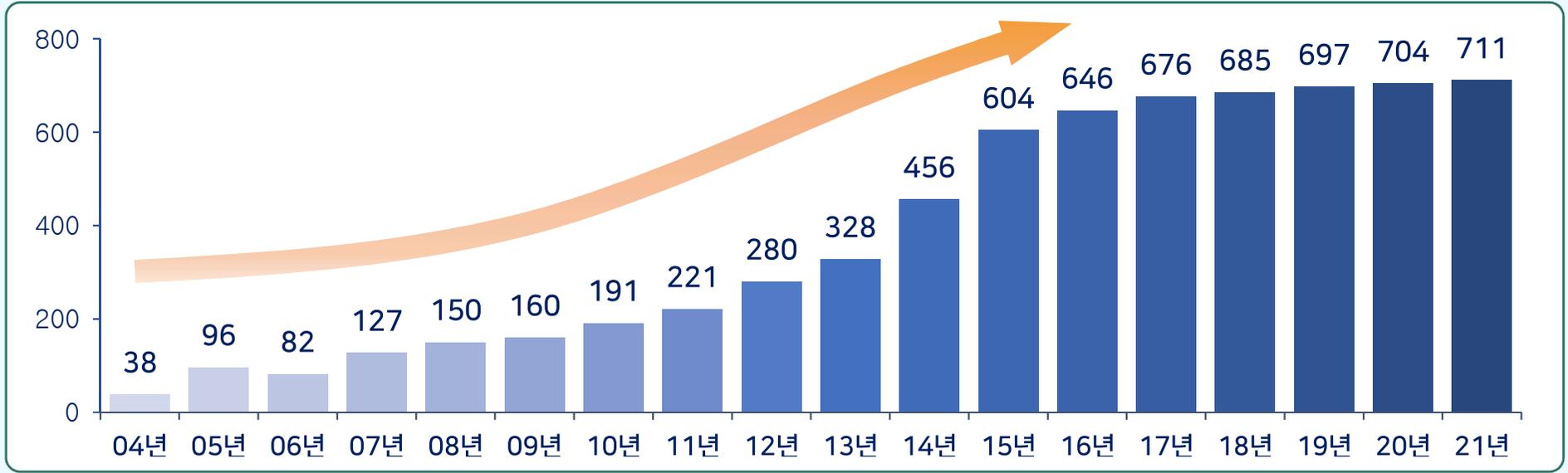
병무청 누리집, 재외공관, 지방병무청에 입영희망원 신청

병역이행

-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가능
-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입영일자 선택 가능
-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어학병, 카투사 등 제외)
- 현역 입영 후 1주간 군적응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현황

신청 현황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에콰도르	중국	일본	필리핀	홍콩	기타
1,783	501	75	242	91	125	172	106	118	184	39	1,459	486	228	249	2,195

혜택

- 정기휴가 중 영주권 국가로의 해외여행 보장(왕복항공료 등 지원)
- 전역 시 해당 국가 귀가 항공료 지급
- 전역자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



VI

안내 사항

1. 카투사(KATUSA) 선발 안내
2. 국외 병역의무자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카투사(KATUSA) 선발 안내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미8군에 증강된 한국군 육군요원(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 한미연합 관련 임무 수행

지원자격

-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처분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지원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
- 현역(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사람

자격요건

- 지원일 기준, 아래 기준 이상의 어학 성적을 보유한 사람
- 어학시험은 정기시험만 해당하며, 특별(수시)시험은 지원 불가
- G-TELP와 OPIc은 국내시험만 인정

TOEIC	TOEIC Speaking	TEPS	TEPS Speaking	TOEFL (IBT)	G-TELP Level 2	FLEX	OPIc
780점 이상	140점 이상	299점 이상	61점 이상	83점 이상	73점 이상	690점 이상	IM2 이상

카투사(KATUSA) 선발 안내

2024년 선발 일정



※ 자세한 선발 일정은 6월 중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지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서 접수 시 유효한 어학성적을 입력해야하므로, **어학시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서 접수 이전에 어학성적을 보유하여야 함
- 국외에서 어학시험에 응시한 경우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함
 - 단, 일본에서 응시한 경우 성적조회동의서 포함

국외 병역의무자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병역이행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병무서비스가 도와드립니다!

01 병역이행 관련 신청은?

-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등의 민원신청이 필요할 경우 **누리집, 병무청 앱**에서 이용 가능
-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나라사랑메일 인증 후 간편인증 이용



02 궁금한 사항 문의는?

- ✓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상담로봇** 운영
 - 병역이행 안내
 - 국외여행 허가 등 민원신청
 - 개인맞춤서비스
- ✓ 전문상담이 필요하다면 채팅상담 예약서비스 이용
 - 단, 상담원 업무시간내



03 각종 전자문서 관리는?

- ✓ 민원서류 등 전자문서는 안전한 **e-병무지갑**에 보관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서
 - 병적증명서 등(30종)
- ✓ 발급받은 전자문서는 온·오프라인에서 활용 가능



VII

질의 응답(Q&A)

감사합니다



병무청